

[별표 3] <개정 2012.1.27>

점용료 또는 사용료 요율기준(제26조관련)

점용 또는 사용의 종류	기 준 요 율
1.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·증축·이축이나 물건의 야적 및 계류	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의 100분의 50이상
2. 토지의 개간	수확예상액의 100분의 25이상
3.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경우	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상징수금액의 100분의 10이상